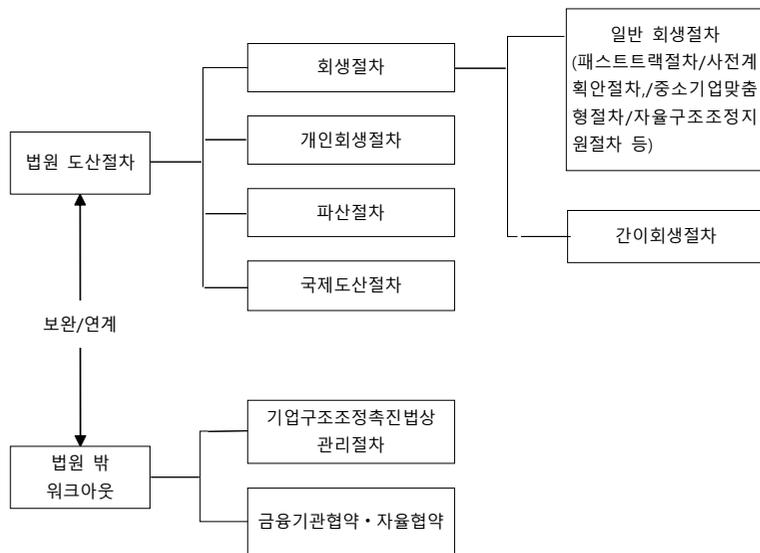


기업구조조정 · 도산절차의 구조와 제도개선 동향

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 민

I. 기업구조조정 · 도산절차의 개관

1. 법원 도산절차와 법원 밖 워크아웃



2. 절차의 목적

(1) 법원 도산절차(court insolvency proceedings)

- 회생절차{rehabilitation(reorganization) proceedings}
 - 공정 · 형평의 원칙에 기한 집단적 채무조정
 - 채무자(법인, 개인 등 모든 유형의 채무자)의 회생
- 개인회생절차(individual rehabilitation(reorganization) proceedings)
 - 비교적 소액의 채무자를 지고 있고 급여소득/영업소득을 갖는 개인채무자를 위한 신속하고 간소한 절차에 의한 집단적 채무조정
 - 절차개시 전의 채무에 대한 면책(예외 있음)에 의한 재기(fresh start) 지원
- 파산절차(insolvent liquidation proceedings/bankruptcy proceedings)
 - 채무자(법인, 개인 등 모든 유형의 채무자)의 재산의 공정한 환가 및 배당
 - (개인채무자의 경우) 절차개시 전의 채무에 대한 면책(예외 있음)에 의한 재기(fresh start) 지원
- 국제도산절차(cross-border insolvency proceedings)
 - inbound(채무자회생법): 외국 도산절차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승인 및 지원
 - outbound(외국 도산법): 국내 도산절차에 대한 외국에서의 승인 및 지원

(2) 법원 밖 워크아웃(out-of-court workout)

- 기촉법상의 관리절차
 - 제정법에 의한 워크아웃 지원
 - 상거래의 계속을 통한 기업가치 훼손의 최소화: 금융채권만을 대상으로 함
 - 자율적 조기 구조조정: 금융채권자(다수결)와 채무자 간의 약정에 기한 채무조정 (법원의 사후적 관여)
- 금융기관협약/자율협약
 - 법원 밖 워크아웃 약정에 의한 자율적 조기 구조조정

3. 주요 용어¹⁾

	회생절차	파산절차	개인회생절차	기축법 관리절차
재산/업무의 관리처분권자	관리인	파산관재인	채무자	부실징후기업/ 공동관리기업
집회	관계인집회	채권자집회	개인회생채권자집회	금융채권자협의회
무담보채권	회생채권	파산채권	개인회생채권	금융채권(무담보)
담보채권	회생담보권	별제권 있는 채권	별제권 있는 채권	금융채권(담보부)
절차개시후 채권	공익채권/ 개시후 채권	재단채권	개인회생재단채권	금융채권(신규 신용공여)

4. 절차의 주요 진행

(1) 회생절차

개시신청 -> 보전처분/포괄적 금지명령/중지명령 -> 개시결정 -> 채권신고·조사
-> 회생계획 가결·인가(권리변경) -> 회생계획 수행 -> 종결

- 신청권자:

- 채무변제시 사업계속에 현저한 지장 초래/파산원인 발생 우려: 채무자
- 파산원인 발생 염려: 채무자, 채권자(합계 자본금 10분의 1 이상 채권), 주주/지분권자(10분의 1 이상의 지분)
- 단, 간이회생절차의 경우에는,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(법인, 개인 등 모든 유형의 채무자)만이 신청할 수 있음.

- 권리행사 중지 및 채무조정:

- 신청~개시전: 보전처분, 포괄적 금지명령 및 개별 중지명령에 의한 권리행사(채무 변제, 강제집행, 담보권실행 등)의 중지·금지
- 개시~계획인가전: 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(회생채권/회생담보권)의 원칙적 변제 금지
- 계획인가~절차종결: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변경된 채무의 변제

(2) 개인회생절차

개시신청 -> 보전처분/포괄적 금지명령/중지명령 -> 개시결정 -> 변제계획 인가
(권리변경 효력 불발생) -> 변제계획 수행 -> 면책 및 권리변경

1) 오수근/한민/김성용/정영진, 도산법(한국사법행정학회, 2012), 48면의 표를 보완.

- 신청권자: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 있는 소액 개인채무자(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 및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)²⁾

- 권리행사 중지 및 채무조정

- 신청~개시전: 보전처분/중지·금지명령에 의한 권리행사(담보권실행 포함) 금지
- 개시~계획인가 전: 권리행사(담보권실행 포함) 금지(계획인가 이후부터는 담보권실행이 허용됨)
- 계획인가~절차종결: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의 변제
- 면책: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시(원칙) 면책결정 받을 수 있음(예외 있음) -> 면책결정 확정시 면책 및 권리변경

(3) 파산절차

파산신청(->면책신청) -> 보전처분 -> 파산선고(파산절차개시) -> 채권신고·조사 및 환가 -> 배당 -> 종결 -> 면책/복권

- 신청권자: 채무자(법인의 경우에는 이사, 무한책임사원도 신청권자) 또는 채권자

- 권리행사 중지 및 환가·배당

- 신청~개시전: 보전처분에 의한 파산채권 행사의 금지
- 개시~절차종결: 파산채권 행사의 금지, 채무자 재산의 환가 및 배당
- 담보권실행의 허용: 파산채권(절차개시 전의 채권)을 담보하는 채무자 소유의 재산상의 담보권(별제권)의 실행은 금지되지 아니함.
- 개인채무자의 면책: 채무자에 의한 면책신청(파산신청일로부터 파산선고 확정일 이후 1개월 이내) -> 별도의 면책재판 진행 ->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 면제(예외 있음) + 채무자의 복권

(4)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공동관리절차

부실징후기업선정 통보(주채권은행) -> 개시신청(부실징후기업) -> 주채권은행의 제1차 협의회소집통보 및 채권행사유예요구 -> 제1차 협의회 의결(공동관리절차 개시) -> 기업개선계획에 대한 협의회 의결(다수결) -> 채권단과 채무자 간에 기업개선이행약정 체결 -> 약정의 이행 및 점검 -> 공동관리절차 종결

- 신청권자: 주채권은행의 신용평가 대상인 부실징후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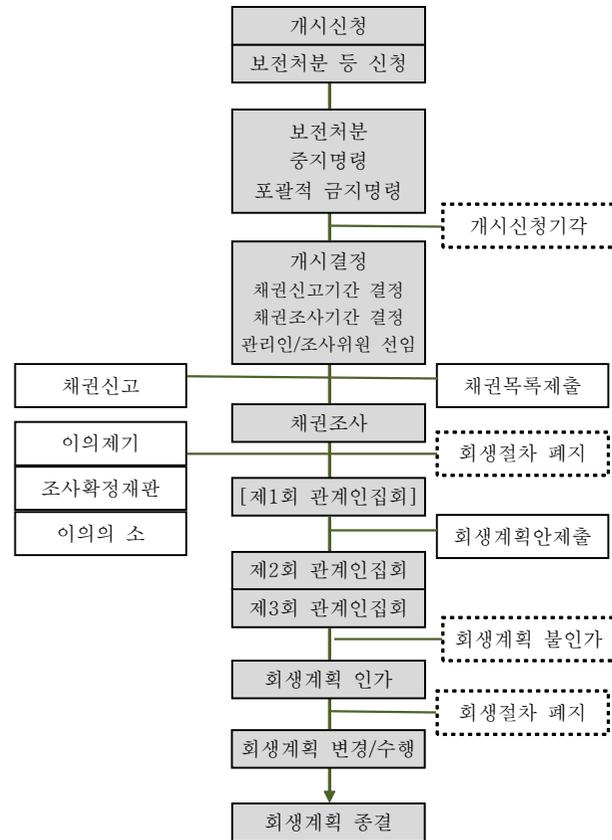
- 절차의 신청·개시와 권리행사 중지

- 절차신청후 개시 전: 주채권은행의 요구에 의한 채권행사(담보권 실행 포함) 유예
- 절차개시후 기업개선약정 체결시까지: 협의회 의결에 의한 채권행사(담보권 실행 포함) 유예
- 기업개선약정의 이행 단계: 약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.

2) 2021. 4. 20. 채무자회생법 개정에 의하여 담보부채무는 1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,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였음.

5. 회생절차와 기촉법 절차의 상세 흐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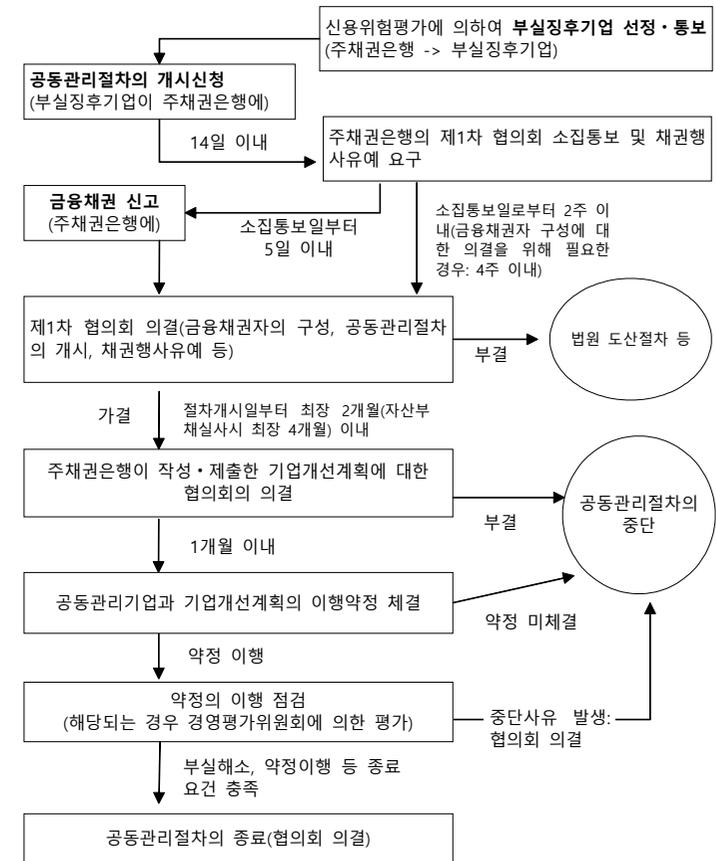
(1) 회생절차³⁾



- 제1회 관계인집회는 생략 가능.
- 사전계획안을 이용하는 경우 회생계획안의 제출시기: 회생절차개시신청 시부터 회생절차개시 전까지

3) 오수근/한민/김성용/정영진, 앞의 책, 49면에서 전제.

(2) 기촉법 공동관리절차⁴⁾



4) 한민/김성용/최준규, “향후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종합적인 운영 방향”, 금융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(2019. 12. 23.), 12면에서 전제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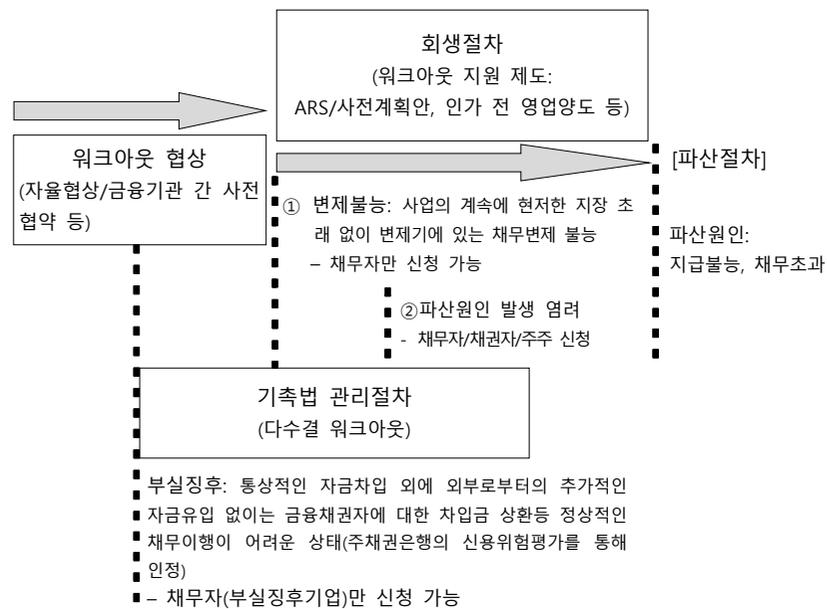
II. 법원 도산절차와 기촉법 절차의 비교

1. 절차 간의 우열

- 도산절차: 개인회생절차(영업소속자) -> 간이회생절차 -> 회생절차 -> 파산절차
- 도산절차와 기촉법 절차: 법원 회생절차/파산절차가 개시되면 기촉법 절차는 중단⁵⁾

2. 절차개시 사유

<워크아웃/기촉법 절차/회생절차/파산절차의 개시 사유>⁶⁾



5) 기촉법 제11조 제5항: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뒤에도 해당 기업 또는 금융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으면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.

6) 한민/김성용/최준규, 앞의 글, 211면.

3. 운용 현황의 비교

(1) 회생절차

<최근 10년간 전국의 법인 회생사건 처리 현황>
(2009년~2018년)

연도	신청	개시결정			개시 후 ~ 인가			인가 후(1)		
		인용	기각	기타	인가	취소(폐지)	기타	종결	폐지	기타
2009	669	511	46	107	257	146	-	14	12	-
2010	630	472	67	87	223	225	-	21	36	-
2011	712	562	47	113	242	253	-	66	51	-
2012	603	585	81	120	290	333	-	86	104	-
2013	835	565	104	137	260	347	1	132	129	-
2014	872	616	94	180	263	334	1	172	137	2
2015 (주2)	925	652	70	206	287	312	2	225	120	-
2016	936	637	71	228	345	309	-	238	121	-
2017	878	629	46	170	317	250	4	276	93	3
2018	980	680	65	204	436	210	1	319	84	1
합계	8,040	5,909	691	1,552	2,920	2,719	9	1,549	887	6

[출처] 법원행정처, 사법연감(2010~2019).

(주 1) '인가 후 진행 중 사건'의 수는 사법연감에 따로 공표되지 않고 있음.

(주 2) 2015년 및 그 후에 개시된 사건에는, 2015년 7월에 도입된 간이회생절차 신청사건도 포함됨.

(2) 기촉법 관리절차

<관리절차개시 기업의 절차 진행 현황(2019년 11월말 현재)>
(2008 - 2015)

(단위: 개사)

연도	개시	개시 후 절차 진행 현황			
		종료	중단	진행 중	미확인
2008	5	1	4	0	-
2009	43	19	8	4	12
2010	35	15	10	3	7
2011	7	2	2	2	1
2012	15	7	5	1	2
2013	12	5	3	2	2
2014	3	1	2	0	-
2015	13	4	4	4	1
합계	133	54	38	16	25

[출처] 한민/김성용/최준규, 앞의 글, 13면.7)

7)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사업보고서 등의 공개자료를 통해 파악한 것이므로 관리절차개시 기업의 수는 실제 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.

III. 기업구조조정·도산제도의 개선

1. 법원 도산절차

(1) 채무자회생법의 제정 및 개정

- 종전의 회사정리법·화의법·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폐지·통합한 채무자회생법이 2005. 3. 31. 제정됨(2006. 4. 1. 시행).
- 도산절차법 분야에서는 상당한 제도개선이 있었으나, 도산실체법 분야(당사자 간의 실제적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채무자회생법의 규정)에서는 단편적인 개정에 그쳤음.

가. 도산절차법 분야의 주요 개정

- 채무자의 도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 등에 의한 M&A 관여 제한(2014. 10. 15. , 2015. 1. 16. 시행)
- 도입 및 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(관계인집회의 생략·병합 등)을 위한 개선(2014. 12. 30. 개정, 2015. 7. 1. 시행)
- 사전계획안 제도의 개선(2016. 5. 29. 개정, 2016. 8. 30. 시행)
- 도산전문법원의 도입(2016. 12. 27. 개정, 2017. 3. 1. 시행)
-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최장 변제기간 단축(2017. 12. 12. 개정, 2018. 3. 13. 시행): 원칙적으로 '변제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'(5년 -> 3년)로 단축
-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장 변제기간의 단축 대상 확대(2020. 3. 24. 개정, 같은 날 시행): 위 2017. 12. 12.자 개정법의 시행일 전에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그 시행일에 이미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.
- 개인회생절차의 신청 자격 확대(2020. 4. 20. 개정, 같은 날 시행):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의 채무액 기준을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

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,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함.

나. 도산실체법 분야의 주요 개정

- 회생절차에서 신규차입자금채권의 우대(2009. 10. 21. 개정, 같은 날 시행):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, 회생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 후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대한 채권(신규차입자금채권)은 다른 공익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.
- 파산절차에서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등의 우대(2014. 12. 30. 개정, 2015. 7. 1. 시행): 파산절차에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 호의 채권(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·재해보상금 채권)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채권을 별제권의 행사 또는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(다만,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는 제외).
- 상거래채권의 보호 강화(2016. 5. 29. 개정, 2016. 8. 30. 시행): 상거래채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'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'을 공익채권으로 인정함. 또한,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법원이 회생채권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였고, 회생계획상 중소기업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우대 변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.
- 파산절차에서 신규차입자금채권의 우대(2020. 2. 4. 개정, 같은 날 시행): 위 2009. 10. 21.자 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 중 최우선권을 부여받은 신규차입자금채권은, 회생절차의 인가 전 또는 인가 후 폐지,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, 회생계획불인가에 이어서 개시 또는 속행된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하여(단, 근로자의 임금·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권과는 동순위로)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.

(2) 서울회생법원의 설치

-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의 설치에 관한 2016. 12. 27.자 법원조직법 개정(2017. 3. 1. 시행)에 근거하여 2017. 3. 1. 서울회생법원이 설치됨.⁸⁾

8) 법원조직법상 회생법원은 다른 지역에도 설치될 수 있으나 현재 서울에만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있음.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을 회생법원으로 봄.

- 서울회생법원은 서울 지역의 모든 도산사건, 모든 국제도산사건 및 그 외에 일정한 대규모 도산사건을 관할함.

- 서울회생법원은 대규모회사의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한 'Fast-Track 절차', 채무자회생법상의 사전계획안 제도를 활용한 'P-Plan 절차',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'S-Track 절차', 회생절차의 '신청 후 개시 전' 기간 중의 자율적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'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(ARS 프로그램)' 등 다양한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.

2. 기촉법 절차

- 2001. 8. 14. 최초로 한시법으로 제정(2001. 9. 5. 시행). 그 후 한시법으로 재입법을 거듭해 오면서 꾸준히 개선 -> 현재 제6차 기촉법(2018. 10. 16. 제정, 존속기간 5년)
- 반대채권자에 대한 구속력의 법적 정당성 확보
 - 반대채권자에게 채권매수청구권 부여
 - 법원의 사후심사(협의회의결 취소의 소): 채무자 또는 금융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,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의 기촉법 위반 또는 채무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협의회 의결의 공정·형평성에 관한 법원의 사후심사
- 문제점: 반대채권자의 채권을 연대하여 매수하여야 하는 찬성채권자들의 부담
- 기촉법의 상시화에 관한 논의

3. 기업구조조정·도산제도의 국제적 동향

(1) 도산에 근접한 시기의 이사의 의무

- 2013년 「UNCITRAL 도산법 입법지침(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Insolvency Law)」을 개정하여 동 지침 제4편에 '도산에 근접한 시기의 이사의 의무'에 관한 입법지침을 신설⁹⁾

- 2019년 위 UNCITRAL 도산법 입법지침 제4편을 개정하여 '도산에 근접한 시기의 기업집단 소속 회사 이사의 의무'에 관한 입법지침을 추가

(2) 국제도산제도의 개선

- **1997년 모델법:** 외국 도산절차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국제적 공조: 1997년에 제정된 「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(UNCITRAL Model Law on Cross-Border Insolvency)」은 현재 46개국에서 국내 입법으로 채택됨. 우리나라는 채무자회생법 제정시 동 모델법을 수용함.

- 1997년 모델법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

- **2018년 모델법:** 2018년 「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(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-Related Judgments)」

- **2019년 모델법:** 2019년 「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(UNCITRAL Model Law on Enterprise Insolvency)」

(3) 조기 기업구조조정제도의 개선

- 예방적 구조조정제도(preventive restructuring frameworks)에 관한 2019년 EU 지침(2019. 6. 20. 제정, 같은 해 7. 16. 발효)

(4) 소규모기업 도산제도의 개선

- **UNCITRAL의 「소규모기업을 위한 도산법 입법지침」 (2021년 채택 예정):** 소규모 기업(Micro and Small Enterprise)에 대한 회생 및 파산 제도의 개선

9)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, 한민, “도산에 근접한 시기의 이사의 의무”,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70호 (2015. 4.), 11-45면.

4. 개선과제

- 조기 기업구조조정제도의 개선(기축법의 상시화 문제 포함)
- 도산절차법 및 도산실체법의 개선을 위한 채무자회생법의 개정
- 최근의 국제도산제도 개선을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한 검토